

의안번호	제 500 호
의 결 연 월 일	2010년 6월 일 (제 290 회)

**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
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**

제 출 자	충청북도교육감
제출연월일	2010년 5월 25일

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500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10. 5. 25.
제 출 자 : 충청북도교육감

1. 제안이유

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 제17조에 따라 2010. 7. 1. 설치되는 충청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지원조직에 필요한 명칭과 정원을 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충청북도의회 사무처에 교육·학예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정원을 정하고 정원관리 단위기관명칭을 변경(안 제2조)

1) 정원관리 단위기관명칭 변경 및 정원의 총수를 정함(안 제2조제1호)
교육위원회 의사국 ⇒ 『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』 제17조제1항에 따른 충청북도의회 사무처 : 7명

2) 본청, 지역교육청, 직속기관, 지역소속 및 공립의 각급학교 정원
- **2,905명 ⇒ 2,911명**(안 제2조제2호)

나. 정원관리의 단위기관 추가(안 제4조)

- 충청북도의회 사무처

다. 교육위원회 의사국 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마련

- 교육위원회 의사국 정원은 2010년 8월 31일까지 정원(7명)이 따로 있는 것으로 간주

라. 다른 조례의 개정

- 「충청북도교육위원회 의사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」 개정(13명⇒7명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붙임과 같음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없음

다. 합 의 : 충청북도의회와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구조문대비표, 붙임

2) 입법예고(2010.3.29.~4.19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3) 규제심사,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

4) 부패영향평가, 평가결과 해당없음

충청북도 조례 제 호

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 제17조제1항에 따른 충청북도의회 사무처(이하 “충청북도의회 사무처”라 한다) : 7명

제2조제2호 중 “2,905명”을 “2,911명”으로 한다.

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4조(정원관리의 단위기관별·직급별 정원) 충청북도의회 사무처, 본청, 지역교육청 및 공립의 각급학교 등 정원관리의 단위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에 따른 교육위원회 의사국 정원은 2010년 8월 31일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.

제3조(다른 조례의 개정)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의사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 중 “13명”을 “7명”으로 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원의 총수) 충청북도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2,918명으로 그 내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<u>교육위원회 의사국</u> : <u>별도 조례로 정한다.</u></p> <p>2. 본청, 지역교육청, 직속기관,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 : 2,905명</p> <p>제4조(정원관리의 단위기관별·직급별 정원) 본청, 지역교육청 및 공립의 각급학교 등 정원관리의 단위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.</p>	<p>제2조(정원의 총수).....</p> <p>1. 「<u>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</u>」 제17조제1항에 따른 <u>충청북도의회 사무처</u>(이하 “<u>충청북도의회 사무처</u>”라 한다) : 7명</p> <p>2. : 2,911명</p> <p>제4조(정원관리의 단위기관별·직급별 정원) <u>충청북도의회 사무처</u>,</p>

관계법령 발취

□ **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**(개정 2010.2.26 법률 제10046호)

제17조(교육위원회 사무에 대한 지원) ①교육위원회 및 시·도의회는 교육·학예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·도의회 사무처에 지원조직과 사무직원을 둔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두는 사무직원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.

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두는 사무직원은 교육위원회 위원장의 추천에 따라 교육감이 임명한다.

부칙 <제8069호, 2006.12.20.>

제2조(교육위원회 및 교육위원에 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어 있는 교육위원회 및 교육위원은 교육위원 임기만료일인 2010년 8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제3조(교육위원회에 관한 특례) ①제4조의 규정에 따른 교육위원회는 2010년 7월 1일부터 설치하되, 2010년 8월 31일까지는 이 법에 따른 교육위원회의 권한 등에 관한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, 「지방자치법」 제50조에 따라 시·도의회 내에 설치된 교육·학예에 관한 사무를 심사·의결하는 상임위원회로 본다.

□ **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**(입법예고 2010.3.12.)

제13조(정원책정의 일반기준)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위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시·도의회 사무처
2. 본청(직속기관을 포함한다)
3. 지역교육청(소속기관을 포함한다)
4. 공립의 각급학교

제19조(정원의 규정) ①시·도 교육청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당해 시·도의 조례로 정한다. <개정 2004.1.29>

1.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시·도의회 사무처 정원
2. 본청, 지역교육청, 직속기관,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및 공립의 각 급학교 정원

②직급별 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의 총수범위 안에서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단위기관별로 당해 시·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어 있는 교육위원회 의사국에 대해서는 제10조, 제13조제2항 및 제1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0년 8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